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 의 명 :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17. 3. 21.(화) 16:05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최성준 위 원 장
김재홍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 불참위원 : 없 음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6시 05분 개회 】

1. 성원보고

○ 최성준 위원장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이소라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최성준 위원장

- 2017년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최성준 위원장

- 지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은 속기록 작성 및 위원님 확인이 끝난 후에 다음 회의에서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8건, <보고안건> 1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의결사항

가.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2017-14-08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가>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동철 방송기반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에 따른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 대한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평가대상으로서 대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나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로서 총 157개 사업자의 361개 방송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기준입니다. 평가영역은 방송법 제31조제1항 및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누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배점입니다. 지상파TV는 900점, 지상파라디오와 DMB는 500점, 종편PP는 700점, 보도와 홈쇼핑PP는 500점, 그리고 SO와 위성은 500점이 되겠습니다. 평가절차입니다. 먼저 평가지원단에서 조사·검토를 하면 이어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수행하고 마지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순으로 평가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가 결과는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되는데 방송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일정 비율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 방송평가 시 고려사항입니다. 먼저 평가규칙 적용 및 방법에 관해서는 지난해 8월에 개정된 방송평가규칙 부칙 제45호에 따라 201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방송실적분은 개정 전 방송평가규칙과 세부기준을 적용하고, ‘16년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방송실적분은 개정된 방송평가규칙과 세부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연간 실적을 반영해야 하는 평가항목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개정 전과 후의 **규칙**을 적용하여 각각 평가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운영영역으로서 재무건전성 및 경영투명성, 수신료 배분의 적정성, 상품선정 기준의 적정성 등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 전 기준에 따른 2016년도 상반기 평가결과와 개정 후 기준에 따른 ‘16년도 하반기의 평가결과를 각각 발표하고,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방송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것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결과를 산술평균하여 도출된 최종 방송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분야 분류의 적정성 검증을 위해서 주시청시간대 보도 프로그램편성 평가를 위하여 방송사 보도프로그램 분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지원단에서 실무적으로 조사·검토하고, 논란이 제기되는 프로그램 분류 등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의견수렴 후 방송평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 방송평가 규칙이 적용되는 첫해인 점을 고려하여, 방송사를 대상으로 평가규칙의 적용기준과 평가 방법, 그리고 평가 자료 작성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입니다. 4월 방송사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에서 9월에 방송평가지원단의 조사 및 검토를 거쳐 10월에서 11월 기간에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평가를 진행하고, 12월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및 공표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 2016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안)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방송평가를 하는 이 제도를 운용하는 취지가 뭐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방송사들이 공정성이나 공익성 저해 방송법에서 정하는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해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번에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평가결과를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방송평가 제도는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등을 평가하는 수단입니다. 평가수단이 가장 먼저 가져야 할 요건은 뭘까요? 저는 변별력이라고 봅니다. 변별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즉, 잘하는 사업자와 잘 못하는 사업자를 구별해 주어야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나중에 방송사업자의 재허가나 재승인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상파 재허가 심사나 금년 초에 있었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종편 재승인 심사를 보면 방송평가가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도 살펴보니까 그렇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올해 결과는 그렇게 큰 점수차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대학 학점도 A부터 F까지 있습니다. 잘 못하면 F 맞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방송평가는 A와 B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A와....

○ 고삼석 상임위원

- 있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A와 B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70점대 맞은 사업자 있습니까? 과장님!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보통 80점대는 평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니까요. 80점 중반부터 쉽게 말하면 B*부터 A까지 나옵니다. 대학에서 학점이 과대 평가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상대평가로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평가 인력들 이런 것 등 여러 가지 제약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에 정해진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운영하는 실태를 정확히 반영해서 평가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방송의 내용, 편성, 운영영역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지적하기를 정말 잘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에 못하는 사업자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지적하면 또 못하는 사업자들 이야기를 해야 하니까. 현재는 방송평가제도가 계량평가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면 다 일정한 점수 이상 고득점하게 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분명하게 평가수단으로 변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즉 잘하는 사업자는 높은 점수를 받고 못하는 사업자는 낮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재승인·재허가 심사에 제대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고칠 생각이 있으신 것이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앞으로 변별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변별력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점수를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방송평가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정했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대표적으로 운영영역의 배점을 대폭 줄이고 내용과 편성영역으로 옮겼더라든지 또는 공정성과 관련된 감점을 그 정도에 따라 대폭 감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다라든지,

그밖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정하면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준비를 해서 2016년도 방송 평가는 과거 다른 해보다는 조금 더 변별력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계속 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더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분들이 없는지 한번 찾아보면서 연구해 나가도록 하십시오. 완벽한 제도라는 것은 항상 없는 것이니까 계속 꾸준히 연구해 나가면 더욱 좋은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보도분야 프로그램 분류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주시청시간대 보도 편성비율을 42%로 이렇게 한정했던 그 취지는 잘 이해하고 계시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새로운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작년 하반기부터 그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 취지는 보도편성비율이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그렇게 우리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런 지적들을 피하기 위해서, 각 방송사가 보도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교양으로 프로그램 분류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42% 이내로 보도편성을 제한할 것을 우리가 관철시키는 이런 개정의 취지를 잘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분류기준을 엄격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고에 보면 보도분야 분류의 적정성 검증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쭙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립된 기준이 사실 없었던 것이 맞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지금까지 기준은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분류해서 온 그대로 바꾸지 않을 때는 인정해 주고 그것을 갑자기 올해부터 이 기준이 적용됐다고 해서 분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예전 기준으로 하도록 저희가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까지는 우리 기준을 가지고서 검증해 왔던 것이 아니고 방송사가 임의로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분류해 온, '이것은 우리는 교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면 그것을 다 받아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우리가 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빨리 우리가 보도프로그램을 엄격하게 분류해서 구분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침 이번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위원단이 이런 기준을 하나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보도프로그램을 뉴스, 또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이 4가지 장르를 다 합쳐서 보도분야로 본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잠깐만요. 그 부분은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의견제시한 것은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앞의 세 부분은 보도로 보는 것이 맞는데 토론대담에 대해서는 보도로 볼 것도 있고 보도로 안 볼 것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맞습니다. 제가 잠깐 그 부분의 미세한 부분을 제가 놓쳤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런 대답이나 토론 프로그램에도 보도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식으로 분류해서 보도비율을 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토론과 대담까지도 보도분야에 4가지 다 넣자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사무처에서 잘 보시고 어차피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굉장히 시급한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 지금 국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이 현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아마 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셔서 빨리 기준을 우리가 확립해야 합니다. 더 이상 방송사의 자의적인 분류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편 심사단에서 제시했던 그런 의견들, 마지막 토론대담 중에서도 보도를 인용하는 경우는 자사 보도를 인용하거나 뉴스를 인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보도프로그램으로 넣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잘 살펴보고 빨리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을 한번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언제까지 기준을 마련하실 생각이십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담당 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예, 그러십시오.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종편 재승인 때 나온 그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감안해서 기존의 결정되었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종합적으로 향후 실질적인 검증에 들어갔을 때 문제없이 운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가급적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언제까지 일정을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하지만 이번에 논의해 주셨던 사안들을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같이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방송평가 기본계획의 검증에 들어갈 때 문제없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특히 뉴스가 과도하게 너무 많이 편중되어서 거의 정치 공해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시청자들의 불만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클리어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기준을 빨리 만들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방송평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은 빨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업자들이 또 각 방송사들이 그런 분류기준에 따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비해서 방송평가를 원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하세요.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송평가위원장인 제 이름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고삼석 위원께서 방송평가 결과가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한 지적이신데 방송평가위원장을 제가 3년간 제3기 내내 하면서 문제점을 많이 느껴 왔습니다. 이제 마치면서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법정위원회에서 중요하게 일하고 계십니다만 우선 방송사 157개 사업자 361개 방송국에 대한 방송평가 결과는 모든 방송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방송사업자에 대해 40% 반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마다 정말 첨예하게 토론, 논쟁이 벌어지는데 3년마다, 5년마다 심사 때만 집중하는 것 못지 않게 1년마다 이루어지는 이 방송평가 작업 40%가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방송평가위원회는 딱 하루 합니다. 오전·오후 하루에 이 157개 방송사업자 361개 방송국에 대한 방송평가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괜찮겠습니까? 저는 개선안으로 최소한 2박 3일, 내부 규칙이든 시행령이든 고시든 해서 2박 3일 정도는 잡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안전이 나올 때마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 이렇게 많은 방송사업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방송평가위원들 양쪽 옆에 자료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평가위원들이 물론 보지 못하고, 지금 3페이지에 적혀 있는 것처럼 평가절차, 평가지원단의 조사·검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수행, 그리고 최종적으로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그러니까 정작 방송평가위원들은 방송사업자들이 제출한 그 자료를 들여다볼 겨를도 없고, 또 평가지원단도, 사무처 행정인력도 부족하고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저는 새 정부 들어서면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인력이나 조직 구조로는 도저히 방송법상 규정된 정책과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부터는 방송평가 1년마다 하는 작업할 때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것을 책정해서 2박 3일 이상은 잡아놓고 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3페이지의 평가절차를 보면 평가지원단 조사·검토,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수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과장께 한번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 방송평가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냐?” 평가지원단은 사무처와 외부전문가, 우리가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작업하는 것입니다. 방송법상 법정기구인 방송평가위원회입니다. 방송법 제31조에 보면 방송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방송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법적근거를 가지고 만든 법정위원회가 방송평가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은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고시나 우리 내부 규칙은 있습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평가규칙에 내용이 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가 의결하는 규칙과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요?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아까 말씀드린 법정기구인 방송평가위원회는 심의하는 것입니다. 평가지원단이 해 온 그 결과를 놓고 그 많은 자료를 오전·오후에 보면서 통과, 통과, 통과 그리고 진짜 문제 있는 것만 평가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것이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아니고 법정기구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3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에 있는 평가절차, 평가지원단의 조사·검토, 방송평가위원회는 심의 평가 수행입니다. 법적근거가 평가를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최종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다. 평가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임무입니다. 평가지원단은 방송평가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법정기구가 아니고 외부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사무처에서 만든 기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구분해 주면 좋겠습니다. 법적 지위가 엄연히 다르고 임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방송평가위원회, 이다음에 어떤 분이 위원장을 맡을지 모르겠지만, 심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평가에 대한 책임은 방송평가위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개선방안으로 시간 계획도 많이 잡고 그리고 필요하면 사전 준비작업을 하는 평가지원단이나 사무처 행정인력도 많이 보강해야 실질적인 평가작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재승인·재허가 심사 때 모아서 3년간 아니면 4, 5년간 모아서 40%를 반영하는 것인데 정상적인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선하기를 제안합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평가위원회 평가기간도 2박 3일 정도로 늘리고 평가위원회에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렇게 해야 변별력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변별력을 차별화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대학 학점 이야기도 하셨는데 A, B, C, D 학점을 주려면 그만큼 교수가 자신이 있어야 합니다. 리포트를 다 읽어보고 차이를 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자료검토 시간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행정지원 인력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개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동철 방송기반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방송평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환경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꼭 몇 박 몇 일 그렇게 정할 것은 아니지만 방송평가위원회를 연속으로 쭉 열어서 계속 심의를 하면 됩니다. 다만, 그러려면 평가지원단이 좀 더 빠른 시기에 평가에 관한 기초자료를 만들어서 방송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송평가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수차례 회의를 계속 진행해서 방송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방송평가를 최종적으로 하는 것은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또 방송평가위원회도 결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평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하는 것이고, 또 평가지원단은 평가위원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도 평가위원회를 한번 거치기는 했습니다만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좀 더 축약해서 정리된 자료들을 배포해서 좀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든지 그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주 위원님!

○ 이기주 상임위원

- 다 말씀들 하셔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간단히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평가규칙의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 신종철 편성평가정책과장

- 훈령 고시로 보시면 됩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도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방송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앞으로 보완이 됐으면 하는 것들을 제안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안으로 말씀하신 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주 다양한 말씀들을 하신 것을 사무처에서 잘 정리해서 앞으로 검토할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보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방송법 제31조에 방송평가에 관한 법의 규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방통위가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다음에 방송평가위원회를 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기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방송법 내지는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부분이 많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상위법령에 근거 규정, 명시규정, 기준 이런 것을 두고 우선 풀어나가야지, 자꾸 방송평가규칙 내지는 계획, 여기에서 자꾸 푸는데 지금 지원단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도 아주 많은데 사실상 평가지원단에 대한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나 인력에 대한 뒷받침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평가와 관련된 법·제도 관련 규정을 업그레이드 내지는 구체화 내지는 보완해야 하지 않나가 첫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는 부위원장님도 계속 지적하신 것처럼 평가대상 사업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슈가 되는 매체는 평가대상 전체가 아니고 여기에 지상파도 TV·라디오·DMB가 있고, SO·위성 그다음에 종편·보도·홈쇼핑이 있는데 딱 한 눈에 봐도 매체별로 방송평가의 비중이 다르게 보입니다, 물론 배점을 달리하고 있지만.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은 매체별로 일률적으로 썩 하기보다는 매체별로 방송평가 기간도 분리하다 보면 저는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결국 인력과 예산이 다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차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에서부터 법·제도, 예산, 인력, 운영 등 종합적으로 접근이 되어야지, 밑에서부터 자꾸 해서는 제가 보기에 오늘 많이 제기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어서 올해는 이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하되 지금 건의해 주신 내용들 중에 별도의 법적 조치 없이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하고 그다음에 또 법적 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을 올해 연구해서 개정안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또 내년부터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주)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14-08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나> ‘(주)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피심인 (주)케이티가 ‘기가LTE’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케이티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기가LTE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을 보고드리면 ‘16년 국정감사에서 “(주)케이티가 기지국 투자는 안 하면서 모든 지역에서 기가LTE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는 지적에 따라, ‘16년 12월 1일부터 실태 점검 및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실조사 결과입니다. 조사는 케이티가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가LTE 관련 속도, 커버리지, 이용 가능 단말기 등에 관한 정보, 즉 중요한 사항을 이용약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였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국회가 지적한 기가LTE 광고의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어 본 안건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요현황입니다. 기가LTE 서비스는 케이티가 ‘15년 6월부터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65요금제 이상의 가입자는 추가적인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한 단말기는 갤럭시 S6 등 최신 기종으로 한정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는 기가Wifi가 제공되는 전국 8만여 곳의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가 되겠습니다. ‘기가LTE’의 기술적 특성은 ‘LTE망’과 ‘기가Wifi망’을 병합하여 기가bps에 이르는 속도로 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도록 구현한 무선 서비스로서 이론상 최대속도인 1.167Gbps 속도를 제공하려면 3밴드 LTE-A망이 구축된 지역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케이티의 경우 3밴드 LTE-A 기지국 수는 전체 기지국 수 대비 3.8%인 5,400여개에 불과하여 1.167Gbps 속도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와 관련, 기가LTE 서비스의 속도를 서울·경기 지역 50곳을 대상으로 실제 측정한 결과, 장소에 따라 최대 731.2Mbps에서 최저 75Mbps에 이르는 점을 확인했고, 전체 평균속도는 363.4Mbps입니다. 행위사실입니다. 조사대상 기간 중 케이티가 이용약관, 홈페이지, 영상광고 등을 통하여 고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케이티는 ‘WCDMA 서비스 이용약관’에 기가LTE의 기술적 특성, 이용가능 요금제 등 개괄적인 정보는 기재하고 있으나 기가LTE 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이용가능 단말기가 제한된다는 정보는 충분히 기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케이티 홈페이지에서 기가LTE 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가LTE 속도, 이용가능 단말기가 제한된다고 고지하고 기가LTE 커버리지와 관련된 별도의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 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미래부 고시)에」 따라 기가LTE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가Wifi 제공 장소 등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케이티는 16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편의 영상광고물을 방송 및 포털 등의 매체를 통하여 노출하면서, 화면중앙에 기존 속도에 비해 4배 빠르다고 자막으로 표기하는 등 빠른 속도의

서비스임을 강조하면서도 이용가능 요금제, 서비스 가능 지역 및 속도가 제한된다는 구체적인 정보는 화면하단에 작은 글씨로 짧은 시간 동안 표기하였으며, 1개의 광고는 이미지광고로서 속도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고유형 A, B, C, D 4가지는 안전 기재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현행 케이티 표준 안내서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정보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인 LTE, Wifi의 속도, 커버리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부가서비스인 기가LTE 서비스에 대한 관련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제50조제1항제5의2에서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의2 가목 및 나목에서 세유유형 및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조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먼저 기가LTE 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이 중요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4] 5의2 나목에는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이용요금’, ‘지원금’, ‘요금할인’, ‘경품’ 등이 명시되어 있고, ‘속도’나 ‘커버리지’ 등 통신품질 관련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6조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품질개선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56조의2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가능 지역 및 제공 방식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속도, 커버리지 등 통신품질은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선택에 있어서 고려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고지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케이티는 ‘이용약관’에서 ‘65요금제’ 이상에 가입하면 기가LTE 서비스를 제공받겠다고 고지하면서도, 서비스 커버리지가 속도, 단말기 등이 제한된다는 정보는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세부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용약관에 홈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하는 안내문구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고, 표준 안내서에서도 안내문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용계약 체결 시 구두 등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 또는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영상광고’의 자막을 통해 이론상 최대속도를 포기하고, 일부 영상광고물에서는 접속자수, 유무선 환경, 단말기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일부 광고물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표기하지 않거나, 일부는 자막의 크기가 작고 노출시간도 짧아 가독성이 떨어져서 이용자에게 기가LTE 관련 정보를 충분히 설명·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소결입니다. 케이티가 이용약관을 통하여 기가LTE 정보를 제공하면서 커버리지와 속도 등이 제한된다는 정보를 충분히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이용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4] 5의2 가목 및 나목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기가LTE 서비스는 유료로 가입하는 별도의 서비스가 아니라 특정요금제 이상에 가입하면 무료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없고, 이용약관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유료서비스이면서 정보제공 의무대상인 LTE 서비스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홈페이지에만 최대속도, 커버리지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른 통신사도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약관 등을 통해 서비스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나, 케이티는 일부 내용이지만 이용약관에 고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속도, 커버리지 등 세부내용을 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시정조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케이티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중요사항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는 하지 않되, 다만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고하고 정보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용약관, 광고물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서비스 커버리지, 속도의 제한성 등을 명확하게 고지할 수 있도록 케이티에게 전기통신서비스 속도, 커버리지 등 품질표시에 관한 개선을 권고하고자 합니다. 권고문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신품질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여 조사대상인 케이티의 기가LTE를 포함하여 모든 통신사업자의 경우에도 통신품질 관련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은 <붙임>을 참조해 주십시오. 향후 위원회에서 시정조치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통신품질 표시 개선 관련해서 통신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지금 사무처에서 보고한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단지 제가 앞으로 보완 내지는 추진하는데 있어서 제안을 드리면 이슈가 되는 것이 속도와 커버리지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유선과 무선은 속도와 커버리지 이슈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퀄리티 오브 서비스(Quality of service), 거기에서 말하는 서비스의 퀄리티라고 하면 무선인 경우에 이것처럼 속도나 커버리지가 중요한 퀄리티에 해당되겠지요. 그런데 그것이 개런티가 안 되는 기술적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슈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실제 속도와 이론상 속도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기하라, 내지는 서비스 이용 가능 장소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라, 이것만이 된다면 문제의 본질을 다 커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해서 했다면, 속도를 실제 구현되는 속도보다 이론적인 속도로 광고했다면 실제 속도를 명시하라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라, 그것은 대부분 아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동통신서비스에 있어서 속도와 커버리지 문제를 어떻게 이용자들에게, 앞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시행령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사항이다, 고지해야 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지금과 같은 그런 접근으로 시작됐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의 중요사항 등에 포함이 안 되고 속도와 커버리지를 명시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것이 광고 자체를 과장해서 한 이슈냐, 아니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속도와 커버리지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데 안 알린 것이냐, 미래부의 통신품질 평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도 링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줬다면 통신품질 평가를 통해 평가해서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명확히 과장광고라면 공정위에서 표시광고법에 의해서 제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통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희 입장에서도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업자가 이것을 오버해서 과장되게 했다면 그것은 사업자가 잘못된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 방통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보완 내지는 취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통신에 있어서 속도와 커버리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제시한 것처럼 앞으로 좀 더 기술적인 검토작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이기주 위원님께서 충분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행위사실 <가> 밑에 보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가LTE 서비스의 커버리지, 속도, 이용가능 단말기가 제한된다는 정보는 충분히 기재하지 않음” 그 밑에 “SKT, LGU+의 경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약관에서 고지하지 않고 있음” 이것이 이번에 우리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조사를 했던 KT 외 SKT와 LGU+에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기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통화품질 평가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통 3사의 광고를 보면 고속서비스, 고품질서비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에 이용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다 안 넣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구체적인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서비스하는 환경에 따라서 속도나 커버리지는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고품질, 고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혹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통 3사들의 입장을 들어보셨습니까? 뭔가 입장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 김재철 통신시장조사과장

- 무선 서비스의 경우에는 유선과 달리 속도나 이런 것들을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워낙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다 표기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알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또는 환경에 따라서 또 이용자 수가 한 곳에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서 워낙 달라지는 측면이 있어서 조사 과정에서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본문에 나와 있다시피 속도나 커버리지는 이용자들이 이통사를 선택하고 서비스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통사들은 당연히 속도나 커버리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내용을 보면 마지막 향후 계획에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한 통신품질 표시 관련 개선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방통위, 미래부, 통신사업자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끼리 하는데 자칫 이것이 결론이 나오지

않게 유야무야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하게 이용자들 입장에서 통신사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는 짧막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무료로 부가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소비자에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유사한 서비스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같이 이런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어느 한쪽만 법적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런 2가지 이유로 대충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러면 이번에 기왕에 개선 권고가 나간다면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들로 보서는 중요한 사항이 맞습니다. 속도가 중요하고 커버리지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중요한 고지사항으로 인식해서 우리가 개선권고안을 내는 것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함께 전파가 되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그래서 KT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선권고를 하고 KT뿐만 아니라 다른 이동통신사업자들까지 포함해서 품질표시에 관한 개선방안을 한번 협의해서 마련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2월 22일경에도 소위 유선인터넷, 기가인터넷이라는 것의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자료를 가지고 기가인터넷 또 500Mbps 인터넷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훨씬 못 미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유선인터넷

넷의 경우에는 최저보장속도라고 해서 훨씬 낮은 것을 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이 속도라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 측정되느냐에 따라 워낙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것을 평균을 낸다는 것도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속도를 보장한다는 것도 그 개념이 과연 무엇일까를 정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커버리지에 있어서도 역시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시행령에 중요한 사항으로 나열하지 못한 것도 사실 그런 데서 기인한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안건에도 있듯이 이용자의 입장에서 속도나 커버리지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 속도 때문에 **한 단계 더** 높은 서비스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전달되고 고지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율적이든 아니면 저희가 또 각 사업자들과 논의해서든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정보 제공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 사건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사업자들과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한 방안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여러 의견 주셨습니다만 KT에 대해서 개선권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은 없으신 것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다.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7-14-082~089)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다>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 및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피심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 이유는 SK텔레콤(피심인①), 케이티(피심인②), LG유플러스(피심인③) 및 관련 43개 유통점이 ‘1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 기간 중 외국인 영업을 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과다지급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조사배경을 보고드리면 ‘16년 국정감사에서 피심인①이 이동통신 외국인 영업부문에 판매장려금을 과도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특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피심인①의 외국인 영업정책 및 관련 유통점의 외국인 영업에 대한 실태점검을 ‘16년 11월 18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실태점검 결과, 피심인① 뿐만 아니라 피심인②, ③ 및 관련 유통점에서 과다 지원금 지급 등의 사실이 드러나 ‘17년 1월 16일 사실조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①, ②, ③이 외국인 영업으로 ‘16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약 체결한 전체 137,311건 중 안산, 동대문 등 외국인 거주 밀집지역에 있는 44개 판매점의 8,465건(총 가입자의 6.2%)에 대한 단말기유통법을 조사하였으며, 44개 판매점 중 법을 위반한 43개 판매점을 확인하였습니다.

43개 판매점 목록은 첨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입니다. 먼저 피심인①, ②, ③은 외국인 영업 관련 42개 유통점에서 5,352명의 가입자에게 공시 지원금이 100분의 15 추가지원금 범위를 평균 195,198원을 초과한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 피심인①은 2,719명 위반율 68%가 되었고 평균 203,779원, 피심인②는 479명 위반율 49.1%가 되겠습니다. 평균 145,281원, 피심인③은 2,154명 위반율 61.8%가 되겠습니다. 평균 195,466원의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피심인①, ②, ③의 외국인 영업 관련으로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42개 유통점 중 17개 유통점에서 신규,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에 따른 부당한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가입 유형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격차 수준은 피심인①은 129,360원, 피심인②는 78,952원, 피심인③은 117,347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유형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피심인①, ②, ③이 각각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심인①, ②, ③이 번호이동 조건에 기기변경 조건보다 각각 293%, 70%, 238%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대리점에 지시 및 내려 보낸 것으로 인해서 17개 유통점에서 피심인①은 720건, 피심인②는 247건, 피심인③은 1,247건 등 총 2,214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가입유형별 차별적인 장려금 구성 및 지급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개 유통점 경기도 오산시 소재 판매점인 참이 판매점 사전승낙서를 미개시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법성 판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피심인①, ②, ③ 관련 42개 유통점이 일부 이용자에게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이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①, ②, ③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피심인①, ②, ③ 관련 17개 유통점이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이 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①, ②, ③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내려 보낸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피심인①, ②, ③이 대리점에 가입유형 간 과도하게 높은 차별적인 장려금을 지급하고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는 가입유형에 따라 이용자에게 지원금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되도록 유도한 행위로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매점 참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미개시하고 영업을 한 행위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먼저 피심인①, ②, ③에 대한 시정조치(안)가 되겠습니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를 각각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의 정도(각 위반율)를 고려하여, 피심인①, ②, ③에게 중대한 위반행위(2% 이상 3% 미만)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각각 부여하되, 피심인①에게는 2.9%, 피심인③에게는 2.7%를 적용하고, 피심인②의 경우 다른 경쟁 2사에 비해 과다지원금 및 가입유형별 차별적 장려금 지급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 중 가장 하한선에 해당하는 2.0%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피심인①, ②, ③의 기준금액은 각각 약 7억 9,493만 1,000원, 약 3억 6,143만 3,000원, 약 8억 783만 5,000원에 해당되겠습니다. 필수적 가중입니다. 관련 고시(과

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4회 위반행위부터 20%씩 가중하도록 규정한 바, 피심인③이 4회에 해당되어, 기준금액의 20%인 1억 6,156만 7,000원을 가중하고자 합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의 경우 피심인 모두 관련 고시에 따른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서 추가적 가중·감경은 없습니다. 최종과징금은 과징금 가중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①에 7억 9,400만원, 피심인②에 3억 6,100만원, 피심인③에 9억 6,900만원을 각각 최종 과징금으로 부과하고자 합니다. 신규모집금지 여부입니다. 피심인①과 피심인③의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된 점으로 볼 때 신규모집금지 적용 요건에는 해당됩니다만 다만 외국인 대상 영업규모가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신규모집금지 제재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여기에서는 신규모집금지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나>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안)가 되겠습니다. 우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43개 유통점에 대해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각각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17조 [별표3]에 따라, 최초로 과다지원금을 지급한 42개 유통점 중 4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위반건수가 2건 이상으로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여 각각 1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하고, 38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여야 하나,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여 각각 1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급 행위와 관련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행위에 해당되어서 과태료 부과는 제외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1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피심인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은 <붙임 3>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동의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문제가 되고 조사를 해서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피심인들이 모두 이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은 다 인정하고 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경중을 판단해서 차별적으로 부과기준을 정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법 규정에 따라 가중해서 이와 같은 결과를 도출해낸 것이어서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습니다.

라. 이동통신 판매점의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 (2017-14-090)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이동통신 판매점의 조사 거부·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의결주문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 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한 피심인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는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 과정에서, 조사를 거부·방해한 피심인에 대해 과태료 부과(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배경 및 주요경과를 보고드리면 LGU+의 법인 영업에 대한 사실조사 실시 중에 2016년 7월 13일 서울 구로구 소재 판매점 (주)열정텔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심인이 조사를 거부·방해하여 당일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로 수사 의뢰하였고, 금년 1월 9일 서울남부지검은 피심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월부터 3월까지 과태료 부과(안)를 작성하여 의견조회를 하였고 피심인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 이○○ 씨는 ’73년생으로 이동통신단말기 판매점 (주)열정텔에서 당시 이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방통위 조사관이 ’16년 7월 13일 14시 20분경 판매점 (주)열정텔에 대해 조사 목적·범위·내용 및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현장 조사를 시작하려고 하자, 피심인은 직원들에게 개인 컴퓨터의 전원을 차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장에 있는 조사관들에게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컴퓨터 모니터·키보드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탁상용 거울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는 등 정당한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단말기유통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단말기유통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별표3] 제2호 너목에 따라 조사를 거부·방해한 피심인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잠깐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행위가 앞으로도 계속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고, 특히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데 위력을 벌이고 집기를 부수고 심지어는 경찰에 우리 방통위 조사관을 주거침입 업무방해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적반하장인데 경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를 했습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경찰에서 수사했고 검찰에 송치해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기소유예 처분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 문현석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형법상의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징역 또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공무집행방해는 인정되지만 죄를 인정하고 또 개전의 정이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조사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관대하게 처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0만원 가지고 과연 합당한 제재가 될 것인지, 앞으로 사고예방 이런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그런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경찰이 기소유예로 판단했다면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근본적인 대비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검찰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은 적절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사를 나가서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조사목적·범위·내용 이런 것, 또 신분을 밝히는 것 등 이 절차를 철저히 취하고 그다음에 피조사자로부터 잘못을 지적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사관들이 지켜야 할 수칙을 잘 준수해야지만 나중에 저쪽에서 조사방해라든지 위법행위를 했을 때 저희가 또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관들과 공유하면서 같이 주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이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마.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 - (재)CBS 대구음악FM방송국, (재)불교방송 제주FM 방송국 (2017-14-091)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마> ‘라디오방송국(FM)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재)CBS 대구음악FM방송국, (재)불교방송 제주FM방송국에 대하여 <붙임 1>과 같이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여 허가를 의결한다.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3년이 적정하나, (재)CBS와 (재)불교방송이 운영하는 기존 방송국과의 허가 허가유효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허가일로부터 ’19년 12월 1일까지로 한다’입니다. 방송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CBS와 (재)불교방송의 신규 라디오방송국(FM) 허가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신청인 현황은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는 (재)CBS와 (재)불교방송에 대해서 각각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 등 총 8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심사평가 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결과, CBS 대구음악FM방송국은 총 698.57점을 획득하였고, 불교방송 제주FM방송국은 총 664.79점을 획득하였습니다. 심사사항별 배점과 심사결과는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견입니다. 먼저 총점은 CBS 및 불교방송은 기존에 방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방송국 운영, 시설구축 등에 문제가 없으며, 대구·제주지역에 대한 방송국 설립 필요성과 적절성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CBS에 대해서는 종교음악 전문 방송으로서 보도·시사·해설 방송을 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고, 재난방송 매뉴얼 개정 및 직원 교육 수행, 시청자위원회 구성 시 성별·연령별·직종별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불교방송에 대해서는 재난방송 매뉴얼 개정 및 직원 교육 수행, 시청자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청자 소통창구 마련,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 수립,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공통사항으로 지역성을 반영한 자체제작 프로그램 비율의 점진적 증대, 해당 지역 인재 채용을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 장비 투자시 중소기업 장비 활용에 대한 적극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미래부 기술심사 결과는 방송국 개설허가에 필요한 기술적 심사항목을 모두 만족하며, 주파수 관리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부관사항에 첨부함이 바람직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CBS, 불교방송 모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하였고, 미래부의 기술심사도 충족하고 있으므로 허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허가 유효기간은 신규허가인 점을 고려하여 3년이 적정하지만 CBS와 불교방송이 운영하는 기존 방송국과의 허가 유효기간을 일치시키기 위해 허가일로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청취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허가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허가조건 및 권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허가조건입니다. 공통 허가조건은 <1>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방송국 개국일 이전에 제출할 것, <2>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재난방송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방송국 개국일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며, 그 이행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3> 지역사회 발전 및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대학 관련학과 졸업생의 채용 등 지역 인재의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국 개국일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4> 기존 무선국에 혼신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비용부담 등을 통해 혼신을 적극 해소해야 하며, 타 무선국으로부터 받는 혼신을 수용할 것, <5> 방송주파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허가제원 조정, 주파수 회수·재배치 등 정부정책을 준수할 것, <6> 방송국 종사자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운영할 것입니다. (재)CBS에 대한 개별 허가조건으로 지

역방송국으로서 지역사회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의 구성을 성별, 연령별, 직종별로 다양화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국 개국일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불교방송에 대한 개별 허가조건으로 <1> 지역성 구현 등 지역방송국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성을 반영한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 개국일 이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며, 그 이행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2> 제주FM 시청자위원회 등 본사와 별도의 시청자 소통창구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방송국 개국일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할 것, <3> 안정적인 방송국 운영을 위하여 자금 조달 및 자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개국일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할 것, <4> 신규 방송국 설립에 따른 방송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방송국 개국일 이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며, 그 이행실적은 매년 4월 말까지 제출할 것입니다. 권고사항으로 공통 권고사항은 장비 투자시 중소기업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그리고 (재)CBS에 대한 개별 권고사항으로 지역성 구현 등 지역방송국 설립 취지를 고려해 지역성을 반영한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3월 중으로 CBS 대구음악FM방송국, 불교방송 제주FM방송국의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방송국의 신규허가에 관해서 심사위원장으로서 꼼꼼하게 심사해 주신 김석진 상임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잘 된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로 650점 이상을 다 획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심사위원들이 봤습니다. 중점적으로 봤던 것이 지역성 구현 쪽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을 또 지역사회에 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을 주문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이 아마 관련 학과 지역 대학생들 많이 채용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쪽 사업주들이 다 그런 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문제없이 잘 통과됐다고 말씀드리고, 국장이 너무 상세하게 심사의견을 일일이 다 소개를 하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보탬이 없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위원님들 다른 의견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바. (주)지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2017-14-092)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바> ‘(주)지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은 ‘에스지건설(주)가 신청한 (주)지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5조의2에 따라 SG건설(주)이 신청한 (주)G1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승인 신청현황입니다. 신청한 개요는 SG건설(주)이 (주)G1의 주식 416,000주를 (주)대양으로부터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방통위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결과입니다. 심사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총 7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심사항목은 방송법 제15조의2제2항 심사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의견입니다. 심사위원회는 SG건설(주)의 (주)G1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사유는 첫째, SG건설(주)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위한 계획, 고배당 지양, 복수감사 도입 및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마련 등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등 제고를 위한 의지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둘째,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하면 사회적 평판이 양호하고, **재무구조가** 안정적인이어서 (주)G1의 최다액출자자로서 재정 능력에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한 실천의지도 충분하다고 판단됨. 셋째, 다만 SG건설(주)의 조창진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주)진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순차적으로 해소하겠다는 확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SG건설(주)의 (주)G1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변경을 승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심사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SG건설(주)이 확약한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을 촉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향후 (주)G1 지내 허가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SG건설(주)이 건설한 확약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배당 지양입니다. (주)G1의 2016년 결산시 대주주로서 배당금액을 회사 유보금으로 전환하여 방송투자 사원 복지 등에 재투자하고 2017년 이후 배당성향을 25% 이하로 축소하는 등 확약서에 제시한 사항의 이행입니다. 둘째 (주)진원 지급보증 해소입니다. (주)진원에 대하여 SG건설(주)의 총자산보다 큰 564억원의 지급보증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확약서에 제시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해소합니다. 셋째, 복수감사 및 임원 자격기준 마련입니다. (주)G1의 감사를 복수로 위촉하고 이사 및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관 및 사규에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 권익 보호입니다. 시청자참여 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옴부즈맨 제도 운영 계획의 이행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으로 의결해 주시면 3월 중으로 SG건설(주)에게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통보하고 (주)G1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국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고삼석 상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잘 점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심사위원님들과 지상파방송정책과에서 꼼꼼하게 심사를 잘해 주었습니다. 검토의견에 나와 있다시피 시청자의 권익보호, 소유와 경영의 분리 그리고 매번 재허가 심사 때마다 지적되었던 고배당 문제, 감사 등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 마련, 최다주주의 재무건전성 등 중점 점검사항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G1 최다주주 변경승인 신청법인인 SG건설의 최다주주, 즉 실질적인 오너가 의견청취 자리에 직접 출석해서 이러한 점검사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확인에 필요한 서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는 무엇보다도 최다주주의 실질적인 오너가 현장에 나와서 약속을 하고 서약서 등을 제출했기 때문에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검토의견대로 추후에 최다액출자자가 약속한 사항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과 고삼석 위원님이 심사위원장을 하셔서 그런지 잘 된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고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2가지가 눈에 띕니다. 고배당을 지양하겠다는 대목, 그다음에 감사를 2명 복수로 두겠다는 부분이 다른 민방에서도 그런 예가 있습니까?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고배당은 G1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지난해 같은 경우도 2015년에 33% 정도 배당을 했었고, 물론 배당을 안 한 민방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G1 같은 경우에는 2012년부터 배당을 높게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높게 하고 또 대주주가 그것까지 배당몫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약간 재투자할 부분들이 어려워지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그동안 재허가 심사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항상 문제로 제기됐지만 저희가 배당 자체를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을 수는 없다고 판단해서 자체제작비용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입하는 조건으로 해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최다액출자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자기가 직접 명확히 밝히고 배당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복수감사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민방들이 비상임 감사를 많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혹시나 비위라든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비전문가 1명에서 밝혀내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회사 차원을 좀 더 하기 위해서 복수감사를 도입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G1 같은 경우에는 임원에 대해서도 징계기준이나 자격기준이 그동안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도 임원이나 이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지역민방들이 어렵습니다만 배당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된 것 같아서 아주 바람직한 선례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것이 다른 민방에도 많이 좋은 모범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감사를 임명한다는 것이지요?

○ 고낙준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보통 사외에서 비상임으로 두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감사를 2명 복수로 뒤서 그런 여러 가지 비리를 잘 감시하는, 이것도 역시 다른 민방의 모범사례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사. 「방송법·방송법 시행령 및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일부 개정안 사전동의에 관한 건 (2017-14-093)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사> ‘「방송법·방송법 시행령 및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일부 개정안 사전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결주문입니다. 의결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및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는 <붙임 1>과 같이 수정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 미래부의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동의한다’입니다. 제안이유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에 따라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입니다. '16년 12월 27일 미래부에서는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이후에 '17년 2월 22일 방통위에 방송법·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한 사전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요청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소유제한 규정 폐지, SO의 복수지역채널 운영허용 규정이 있으나 미래부는 사전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성방송·SO·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허가 및 재승인 절차, 방법, 기준 등에 대한 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재허가·재승인 심사기준 등의 고시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대상사업자에 방통위가 소관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PP, 그리고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방송법 방통위 수정(안)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통위 수정(안)을 미래부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SO의 설비·채널 변경 시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제를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SO의 임의적인 채널변경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초래 및 지상파 PP의 권익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채널 변경허가의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라서 채널 변경의 경우에는 현행 규정처럼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정안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방통위 수정(안)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복수의 방송구역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법인별로 하나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중에서 위성방송사업자의 SO 소유제한 규정 폐지 및 SO의 복수지역 채널 운영 허용은 사전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방통위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종합유선방송구역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는 단순히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동의하고자 합니다. 종합의견으로 미래부의 방송법 일부 개정(안) 및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개정내용을 검토의견과 같이 수정하여 동의하고, 고시 개정(안)은 미래부의 개정(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에 사전동의 심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더 없습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여기에 의견을 적시해 놓긴 했습니다만 위성방송의 SO 소유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SO의 복수 지역채널 운영 허용, 이것이 사전동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 검토의견을 방통위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물론 법조문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래부와 우리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2가지 사안 자체도 사전동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의로 미래부의 의견대로 이것은 사전동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한다가 아니라 이것은 사전동의의 사항이다. 그래서 사전동의의 사항인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 2가지 사안에 대해서 동의한다 이렇게 제시해야 맞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미래부에서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사전동의 요청에 포함시켜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전동의를 해 준다는 것도 절차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러면 전체를 반려해야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 절차보다도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하면 예를 들어서 5페이지에 해당 항목에 대해서 '사전동의 대상 여부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나, 아래 검토의견을 방통위 의견으로 제시' 이 표현보다는 앞에 '미래부는 사전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사전동의 요청을 하지 않음'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 입장을 밝혀서 무엇무엇은 사전동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아래 검토의견을 방통위 의견으로 제시,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도 됩니까? 이것이 동의 여부를 안 물었는데 우리가 동의다, 부동의다 의견을 말하는 것은 조금 어색한데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대상으로 보고 우리 의견을 내겠다는 그런 입장만 여기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석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래부가 일방적으로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전동의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간다면 또 다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취지를 봐야 합니다. 뭐냐 하면 사전동의의 취지는 과거에 미래부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분리해 나갈 때 산업적인 측면의 부분들은 대부분 미래부가 점검을 하고 사회·문화적인 측면의 부분들에 있

어서는 방통위가 사전동의 하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SO의 복수 지역채널 운영 허용 같은 경우는 지역채널을 무슨 경제적·산업적 관점에서 운영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방송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판단하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충분히 사전동의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저희 입장도 고 위원님의 입장과 다른 것은 아니고 명확하게 미래부에 그런 뜻은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 건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형태로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입장이 동일하니까 해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하지만 나중이라도 입장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 의견이 수용 안 되면 절차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의 해석에 관해서 처음으로 이것이 문제가 된 사안이지 않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기 때문에 종래의 사례도 없었고 이번에 이것이 사전동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처음으로 판단이 되는 것인데 미래부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와는 서로 의견이 다른 상황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아무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마치 미래부의 의사대로 사전동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사전동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의견은 같습니다. 다만, 이 표현을….

○ 이기주 상임위원

- 저희가 이야기할 때와 조금 이야기가 다른데 저는 차라리 이것 그대로 놔두고 '아래 검토의견을 방통위 의견으로 제시'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 밑에 참고표시를 해서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사전동의 대상이라고 본다' 하는 것을 거기에 써 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깔끔할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또 이유를 **대면** SO의 복수지역채널 운영 허용과 또 위성방송사업자의 SO 소유제한 이것이 두 사안이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냥 구체적인 법리적인 논쟁보다는 제 생각에는 '복수지역채널 운영 허용은 사전동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검토 의견을 방통위 의견으로 제시'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전동의 대상으로 본다는 의사가 명확하게 들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이 사전동의** 대상이냐, 아니냐 가지고 법리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를 여기에 쓰면 그것이 길어지니까….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지금 사무처에서 한 워딩대로 하는 데 동의하고 그 워딩을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미래부와 의견 교환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미래부가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미래부는 사전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의견 교환했는데 아니라고 본다?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면 현재에 권한쟁의 소송을 해야지요. 이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와 나눌 때 교통정리가 잘못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수리로 정리해온 문제입니다. 마지막 임기말에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엄연히 국법입니다. 실정법 체계의 법이지 않습니까? 법적인 사항으로 우리가 사전동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미래부라고 해서 이 방통위 설치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판단대로 가도 괜찮습니까? 저는 이 사전동의를 보류하기를 제안합니다. 사전동의 보류하고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해서 해결된 뒤에 사전동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갈 일은 아니지요.

○ 최성준 위원장

- 일방적은 아니고 저희는 저희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8호를 보시면...

○ 김재홍 부위원장

-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는 사항인데...

○ 최성준 위원장

- 제8호가 미래부의 주장과 저희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장이 문언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해석도 되고 이렇게 해석도 되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와 같이 규정하게 된 입법 취지라든지 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가 아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는 방송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전부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이 서로 갈리고 있는 부분이고 권한쟁의까지 갈 사항은 아닌데, 다만 지금 저희가 이번 사례에서 분명히 해 주어야 할 것은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제8호의 해석상 방송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에 있어서는 다 사전동의 대상으로 본다는 저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자꾸 미뤄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차라리 저희 의견을 명확하게 밝힌다는 의미에서 제가 아까 제안을 드렸던 것처럼 5페이지에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의 SO 소유제한 규정 폐지 및 SO의 복수지역채널 운영 허용에 대해서는 미래부가 사전동의를 요청하지 않았으나 사전동의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아래 검토의견을 방통위 의견으로 제시한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렇게 하세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그러니까 같은 정부기구, 정부부처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적당히 정리하고 덮어가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엄연히 캐비넷 내각의 독임제 부처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릅니다. 이 정부에서 나눠 놓긴 했지만 방송통신의 기본정책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여야와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독임제 부처에서 이런 기본정책에 대해서 그쪽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권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보편적인 기구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전동의 저는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런데 저희가 사전동의 대상이라고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미래부가 사전동의 요청을 안 하는데 그것을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다른 안건에 대해서 사전동의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을 초과해서 미루고 있다는 것도 적절한 행정처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 생각에는, 미래부와 협의했다는 것이 실무적으로 협의한 것이지요?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실무적으로 협의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워딩대로 하면 방통위의 의결을 거쳐 방통위의 의견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자꾸 미래부 이야기 하지만 실무자들 선에서 그런 의견교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통위 차원에서 미래부와 이제 우리 입장을 이야기하면서 협의를 하는 스타팅 포인트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실무적으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자꾸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 김재홍 부위원장

- 우리는 분명히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김재홍 부위원장

-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러면 미래부는요? 무엇을 가지고, 자기들 판단입니까? 재량권입니까?

○ 신영규 방송지원정책과장

-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 최성준 위원장

- 똑같은 법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 김재홍 부위원장

- 방통위 설치법 제12조제8호에 대해서 명백히 되어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변경의 제정·개정·폐지에 대해 동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최성준 위원장

- 그것이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래부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재허가·변경허가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라고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재허가·변경허가 및 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이라는 것이 허가·재허가·변경허가에 걸리는지, 아니면 방송사업자에 걸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것입니다. 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의 해석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미래부 해석이 전혀 법에 근거가 없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저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워딩을 해서 의결하면 이제 협의가 들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예.

○ 최성준 위원장

- 저희 의견을 분명히 이것으로 밝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생겼을 때는 우리는 계속 이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부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니까요.

○ 김재홍 부위원장

- 우선 그렇게 넘어가는데 애초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부의 업무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중복되어 있기도 해서 여러 차례 곤란을 겪었고 정리를 겨우 해 왔는데 이 문제도 그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 최성준 위원장

-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표현 기재하셨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아.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 (2017-14-094)

○ 최성준 위원장

- <의결사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영관 방송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사 재허가에 대해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에 아래의 재허가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하는 조건으로 동의한다’입니다. 먼저 재허가 조건은 공통사항으로 해당 방송은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권고사항은 공통사항으로 해당 방송은 시청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익·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티브로드 9개사에 대해서는 (주)티브로드는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기여계획이 미흡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씨제이헬로비전 6개사에 대해서는 (주)씨제이헬로비전은 방송매출액 대비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실적이 극히 저조하므로 지역사회 기여 및 공익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주)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에 대해서는 (주)케이씨티브이 제주방송은 지역 시청자 제작프로그램의 제작 및 편성 실적과 계획이 미흡하므로 시청자 제작 프로그램의 제작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안이유는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대상사업자가 나와 있고 경과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약식 사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방송, 법률, 회계분야 등 외부전문가 3인으로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안), 그리고 사업자 신청서 등을 검토한 결과, (주)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SO 재허가에 대해 미래부가 부과한 재허가 조건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니다. 다만, 방송의 공익성 강화를 위해 아래의 심사의견을 고려하여 별도의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표>에 방통위 약식심사위원회 주요 심사의견은 앞에서 보고드린 재허가 조건 그리고 권고사항에 이미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종합유선방송사업 재허가 사전동의 약식심사위의 의견제시 내용, 미래부가 제시한 재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씨제이헬로비전 등 35개 SO 재허가에 대해 의결주문과 같이 동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보고드린 내용을 의결해 주시면 미래부에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전에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미래부에서 이미 650점을 넘은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저희가 약식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한 것이지요?

○ 김영관 방송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

○ 최성준 위원장

- <보고사항 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에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4] 제5호 사목 4)에서 위임한 사항인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한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를 보고드리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작년 12월 30일 공포되었으며, 오늘 제정하고자 하는 근거법령인 [별표 4] 사목 4)의 시행일은 금년 7월 1일이 되겠습니다. 작년 10월부터 금년 1월까지 총 8회의 고시 제정 연구반을 운영하였으며, 제정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금년 2월 관계 전문가 및 사업자 등 추가 의견을 수렴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고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

고드리면 안 제2조에서 행위주체 및 상대방을 모두 전기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부당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서 부당한 행위 여부는 행위주체, 해당 서비스 시장, 행위로 인한 영향과 관련한 총 9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당한 행위 관련 판단 고려 요소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부당한 행위의 예외로서 실질적인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큰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및 보안성 확보한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로 하며, 이때는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보고드린 고시 제정안은 3월 27일부터 20일간의 행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서 금년 7월 1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를 듣다 보니까 약간 표현의 문제이긴 하지만 안건 3페이지 부당한 행위 여부 판단 고려요소 박스 밑에 ‘다만, 부당한 행위의 예외로서’라고 했는데 표현이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는데 예외를 둔다는 것인지 약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 취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밑에 ①번부터 ⑥번까지 해당되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것들의 일종의 예시적인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되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예외’라는 표현이 조금 적절한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만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서….

○ 이기주 상임위원

- 위원장님, 그런데 고시 제정안 위당을 보니까 예외라는 말은 없어 보입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 고시 안에는 없습니다. 고시 안에는 예외라는 말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이 저희 안건에는 예외라고 있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그 표현을 가다듬으면 어떨까 싶어서….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수정하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뭐라고 하면 좋을지, 하여간 예외라고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아니면 '다만 그다음에 ①, ②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 최성준 위원장

-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예, 아니한다라든지 그렇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기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기주 상임위원

- 해설서 만든다고 했는데 자신 있습니까? 머릿속에 아웃라인을 가지고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사실은 오늘 고시 개정안 보고드리기까지 통신사업자, 인터넷사업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과 여러 번 토론을 했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제가 먼저 약간 걱정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고려요소라고 아홉개 정도가 있고 또 부당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여섯 가지 있는데 이 경우를 더 풀어서 해설서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김종영 이용자정책총괄과장

- 예, 그렇습니다. 9가지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행위 심사지침을 참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차후에 해설서 만들 때 공정위의 부당행위 심사지침을 참고하고 저희들이 그동안 사례를 찾아 봤던 것들 중심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기주 상임위원

-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가, 당초 초안은 예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재영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관계자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단서조항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해설서에서 각각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지도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끝으로 걱정하는 것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많이 인정하다 보니까 만약에 해설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원래 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에 대해서 금지행위로 정의한 그 취지가 많이 퇴색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설서를 만들 때 해설서에서 모든 것이 다 클리어 될 수는 없

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디테일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저희가 최종적인 판단은 어떤 케이스가 생겼을 때 조사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이용자의 편익이나 후생증대가 큰 경우라든가 이용자의 이익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것이 계량적인 분석도 필요한 것인데 해설서에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지행위 유형을 새로 도입하는데 너무 예외적인 경우를 많이 인정하면 당초 이 규정을 도입한 취지가 많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알겠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이기주 위원님 걱정하신 부분이 잘 반영되도록 하고, 이 고시를 만듦에 있어서 지금은 이 고시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고시안에 넣는 방법, 넣을 때 그것을 예시적으로 넣을 것인지 또는 한정적으로 열거할 것인지 등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고시를 이렇게 어찌 보면 추상적으로 보일 정도의 기준밖에 제시하지 못한 것이 과연 그런 구체적인 기준을 나열하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그래서 이기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을 해설서에 가지고 갔을 때에도 비슷한 고민이 또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제3조제2항과 관련되어서 어느 정도까지 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과 미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 놓는 것이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고려해서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처음부터 완벽한 해설서를 만들겠다고 접근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우선 사업자들에게 기초적인 것을 알려주는 이런 해설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앞으로 그런 케이스가 축적되어 감에 따라 좀 더 구체적이고 치밀한 해설서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최성준 위원장

-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최성준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고삼석 상임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오늘 오전에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이 자진사퇴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재작년과 작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신입직원 채용비리, 파견근로자의 부적절한 채용, 관용차 및 법인카드 사적 이용 등 각종 의혹이 지난해 우리 방통위원회 감사를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2월 6일 재단 이사회는 이석우 이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또 이사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재차 해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 즉 인사권자인 위원장님께서 해임 건의안을 반려했고 오늘 오전에 이석우 이사장은 자진사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오늘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석우 이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은 해임 건의안을 반려했지만 나는 재단을 떠나려고 한다” 제가 다시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통해서 해임 건의가 된 분이 자진사퇴 형식으로 떠나는데 그러면 반성이나 사과의 발언을 했느냐?” 했더니 끝까지 한마디도 반성과 사과의 발언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가 이사장 해임을 건의하고 이사장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해임 건의 입장을 다시 의결한 것은 이석우 이사장이 해임당할 정도의 잘못을 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 이것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제가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최종 해임 결정에 앞서서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해임을 시키는 것보다는 자진사퇴하는 것이 조직의 조기 안정화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다만, 부위원장님이나 저는 이석우 이사장을 처음 임명할 때부터 부적격자로 강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되었고, 지난 2년 동안 시청자미디어재단을 만신창이로 만들고 떠났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의 발언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사권자이신 위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한마디 입장은 밝히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의 고심의 깊이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한 말씀해 주시고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최성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경과에 대해서는 더 덧붙일 말씀이 없습니다. 이사회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을 했습니다. 다만, 이사회에서의 해임 건의 판단에 대해서는 저희의 감사결과와 비교했을 때 걱정한 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제가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고민한 결과, 어제 그와 같이 해임 건의에 대해서는 반려를 했고 그다음에 이사장님께서 오늘 사퇴를 하셔서 사임서를 제출해서 수리했습니다. 물론 이사장으로서 과연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2015년 6월에 신입직원을 또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발생한 사실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종합감사를 하여 그것이 나

온 것이긴 하나 이후에 다른 직원 채용 등과 관련해서는 처음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혼란이 진정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지금 설립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좀 더 체계적이고 그다음에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서 원래 설립취지에 맞게 시청자 권익보호 그다음에 소외계층에 대한 미디어 미터러시 교육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부수적으로 부과해서 수행하고 있는 그런 업무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3월 24일 오전 9시 30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폐 회

○ 최성준 위원장

- 이상으로 2017년 제14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8시 10분 폐회 】